농림축산식품부 제2025 - 121호

#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(축산) 2차 신청 공고

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(축산)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2 월 28 일 **농림축산식품부장관** 

- 1. 신청기간 : 2025. 2. 10. ~ 3. 31.
- 2. 신청장소 : 농장소재지 시·군청 사업담당과
- 3. 신청대상: 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
  - 가. 신청인 자격요건
    - <sup>①</sup>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, <sup>②</sup>소(한우, 육우, 젖소), 돼지 또는 닭(산란계)를 사육하는 <sup>③</sup>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  - 나. 신청 축종 : 한우, 육우, 젖소, 돼지, 닭(산란계)

#### 4.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

### 가. 환경친화사료(저메탄·질소저감사료) 급여

- '저메탄사료 급여'의 경우 소(한우, 육우, 젖소)에 해당되며, 한우·육우는 비육우에, 젖소는 착유우에 급여해야 함. 단, 한육우는 번식우도 참여 가능
- '질소저감사료 급여'의 경우 돼지, 소(한우, 육우), 닭(산란계)에 해당되며,
  - 돼지는 비육돈 생산 전구간(이유돈, 육성돈, 비육돈), 한우·육우는 큰소후기, 산란계는 산란 전 구간(산란전, 초·중·말기)에 급여해야 함. 단, 돼지는 모돈(임신돈, 포유돈)도 참여 가능
- 반드시 **농장 내 해당 구간 전체에 급여해야 함**(일괄급여). 단, 축사동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구간의 일부 두수만 급여 가능(부분급여)
  - \* 사업대상자는 사업 신청시 부분급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(축사·급여시설 사진, 축사 도면도 등)를 제출

#### 나. 강제송풍·기계교반 장비·장치 이용

-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기계교반·강제송풍 또는 강제송풍 장비 ·장치를 이용하여 한우·육우 및 젖소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호기적 퇴비화 자가 처리
- 장비·장치 내에 부착된 전력계의 전력사용량(kWh)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.
  - \* 기계교반·강제송품 장비·장치는 고정형 전기기계만 인정하되, 이동형 전기 기계는 해당 장비·장치의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전력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인정 가능

#### 《 활동별 주요내용 및 단가 》

활동명	주요 내용	단가
저메탄사료 급여	▶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」제2조제7호에서 정하 는 저메탄사료를 구매하여 먹이는 활동	한우·육우 25만원/두년
		젖소 5만원/두년
질소저감 사료 급여	▶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」제2조제8호 및 제9조제1항 에서 정하는 질소저감사료를 구매하여 먹이는 활동	돼지 5천원/두/년
		한우·육우 1만원/두/년
		산란계 2백원/두/년
(퇴비) 강제송풍· 기계교반 장비·장치 이용	<ul> <li>▶ (기계교반·강제공기공급)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기계·장비(스크류, 에스컬레이터 등)를 활용해 퇴비 더미를 교반·혼합하고, 송풍장치(에어 블로워 등)로 공기를 강제 공급하는 통합 시스템을 추가하여 활용</li> <li>▶ (강제공기공급 방식)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송풍장치 (에어 블로워, air blower)를 이용하여 퇴비단에 강제적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추가하여 활용</li> </ul>	한우·육우 기계교반· 강제송풍 13천원/톤/년
		한우·육우 강제송풍 5백원/톤/년
		젖소 기계교반· 강제송풍 15천원/톤/년
		젖소 강제송풍 5백원/톤/년

## 5.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

#### 가. 제출서류

구 분		비고
공통	I.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(축산) 신청서	
	<b>田.</b> 감액기준 동의서	
	Ⅲ. 「축산법 시행규칙」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 의4서식에 따른 축종별 가축사육업 허가증	전산확인 가능시 미제출 가능
환경 친화 사료 급여	1. (돼지) <b>가축재해보험 보험증권</b> (사본)	돼지 사육농기만 제출
	2. (부분급여) 축사시설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된 축사 사진, 도면도 등	부분급여 선택 시 제출
기계교반· 강제송풍 이용	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<b>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</b>	

나. 신청방법 :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시·군에 등록신청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인·단체 소재지 시·군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 (044-550-5063)에 문의하시거나, 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(축산분야)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